

초빙교원 규정

제정 1993. 3. 1. 개정 2001. 9. 1.
전문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4. 3. 1. 개정 2016. 11. 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초빙교원의 자격, 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초빙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 해당하는 자(다만, 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력 및 학생지도를 위하여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수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담당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
3. 임용일 현재 전 근무처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주당 2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 <개정 2016.11.9.>
5. 학생지도 및 교수 능력이 있는 자

②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1항에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담당과목이나 강의내용 등을 볼 때 국내인으로 대체하기가 어렵거나 국내인 보다 교육효과가 현저히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별표1의 “19호 : 교수(E-1), 20호 : 회화지도(E-2)”로 입국자격을 가진 자
3. 체류기간이 임용기간보다 길거나 연장이 가능한 자

제3조(임용기준) 초빙교원의 직급별 임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수 : 산업체 등에서 담당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의 근무경력이 30년 이상인 자
2. 부교수 : 산업체 등에서 담당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의 근무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3. 조교수 : 산업체 등에서 담당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의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제4조(임용) 초빙교원의 임명은 소속 학부(학과)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7.1.>

제5조(재임용)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초빙교원 중 <[붙임1] 초빙교원 근무성적 심사 평정표>에 의한 근무 성적평정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용 제청한다.

제6조(임용기간) 초빙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기간의 갱신 여부는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복무) ① 초빙교원은 업무와 관련한 복무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② 초빙교원은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시간을 담당해야 한다.

③ 초빙교원은 교수회의 등 제반 의식에서 제외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보수) 초빙교원의 보수는 연구 및 교육경력, 계약조건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봉으로 지급하되 지급시기, 방법, 금액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퇴직) 재계약이 되지 않는 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에 당연 퇴직한다.

제10조(준용) 초빙교원 임용에 대해서 이 규정에 정한 바가 없는 사항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1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개정 2014.3.1.>

초빙교원 근무성적 심사 평정표

1. 피평정자 인적사항

소 속	학부(학과) 학부(학과)		평정자	교학처장 : (서명)
직 급	성 명			
본 대 학 재직기간			확인자	총 장 : (서명)
평정기간				

2. 근무성적 평정

구 분	평 정 항 목	평 정 내 용	평 점	비 고
1. 교수로서의 품위 (20점)	(1) 교육자로서의 품위	언행, 교육관, 사명감		
	(2) 인간관계	융화, 진실성, 예의		
2. 교수(강의, 20점)	(1) 강의의 열의와 충실도	사전준비 및 강의 열의, 수업 방법과 교재의 개선		
	(2) 평가의 적절성과 교육효과	과제부여와 평가의 적절성 및 공정성 학생의 반응		
3. 학생지도(20점)	(1) 학생지도의 열의와 실적	학생생활에 대한 관심과 지도열의 방법의 합리성		
	(2) 진로지도의 열의와 실적	현장실습, 취업, 산학협동에 대한 열의와 실적		
4.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20점)	(1) 발전, 개선의 적극성과 창의성	창의적, 발전적 의견제시 및 성과		
	(2) 상호 협조 자세	구성원으로서 소속집단에 대한 애착심		
5. 근무상황(20점)	(1) 책임감 및 준법정신	의무의 실행, 규정준수, 회의와 행사참여		
	(2) 근태	결근, 결강		
평 점 계 (100점)				
의 건				
주임교수 의 건				

※ 평점 합계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재계약을 결정함.